

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85호

의 안 명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의 결 일 2021. 2. 8.

주 문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폐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2월 8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혹

위 원 손 난 주

[별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

2021. 2.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제도현황	2
III . 문제점	5
1. 배출가스저감장치 안내기관 불명확	5
2. 유명무실한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7
3. 진행상황을 알 수 없고, 차주의 선택권이 제한된 부착과정 ..	9
4. 장치부착 후 관리부실 등으로 국민불편 유발	10
IV . 개선방안	11
1. 배출가스저감장치 안내기관 명확화	11
2.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13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진행과정 공개	15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관리 강화	16
VI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7

I. 추진배경

〈 대통령 말씀 〉

-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며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힘을 포용적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20.12.1. 국제반부패회의)

- 정부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유도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등
-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관련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문제 대두
 - ※ 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 ('18.) 444억 → ('19.) 2,814억
- 이에 권익위 실태조사 및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관련된 불공정 및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
- 임의로 설립된 '부착지원센터*'가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신 신청자와 장치제작사를 연계하고 장치제작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 '15년 설립된 '자동차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 업체로,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간부로 재직했던 자가 실질적인 대표 ('2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장치제작사가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관행 등에서 유추 할 수 있는 장치 가격 부풀리기 의혹 ('2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 실태조사 결과는 환경부 및 검찰 등에 기송부 ('20.12.10,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지원 수요 증가하나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장치부착 지연, 불투명한 진행과정 등으로 인한 민원 급증
 -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창구에 접수된 관련 민원 : ('17.) 214건 → ('18.) 330건 → ('19.) 1,456건 → ('20.11월) 994건 (검색키워드 : 매연저감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추진경과 : 실태조사(8~11월), 민원분석(12월), 제도개선 방안 마련(12월), 기관협의(1월)

II. 제도현황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목적

- '05년부터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

○ 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저공해조치보조금규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배출가스보조금지침') 등

○ 관련기관

- (환경부) 배출가스저감장치 정책 수립, 국가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 집행·관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 : 차량의 특성·운행조건을 고려한 적정 배출가스저감장치 안내, 장치제작사 보급물량 관리 지원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 규모

- (규모) 국비 50% · 지방비 50%로 조성되며 '20년 보조금은 2,765억원

-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19년부터 전년 대비 6.3배 대폭 확대

※ ('17.) 494억원 → ('18.) 444억원 → ('19.) 2,814억원 → ('20.) 2,765억원

< '20년 배출가스저감장치(DPF·pDPF)* 보조금 및 사업량 >

(단위 : 백만원, 대)

구분	국비(50%)	지방비(50%)	물량	구분	국비(50%)	지방비(50%)	물량
계	138,285	138,285	80,003	충북	4,261	4,261	2,465
서울	34,549	34,549	19,988	충남	2,593	2,593	1,500
인천	29,337	29,337	16,973	전북	1,037	1,037	600
경기	48,398	48,398	28,000	전남	691	691	400
부산	3,457	3,457	2,000	경북	2,610	2,610	1,510
울산	2,593	2,593	1,500	경남	519	519	300
대구	3,457	3,457	2,000	강원	1,037	1,037	600
대전	2,593	2,593	1,500	제주	151	151	87
광주	864	864	500	세종	138	138	80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 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지원금액) 차량당 장치 가격의 90%까지 최대 929만원의 보조금 및 필터클리닝비 등 유지관리비 46만원 지원

※ 차량소유자는 장치 가격의 10% (24~103만원)만 부담

< 차량종류별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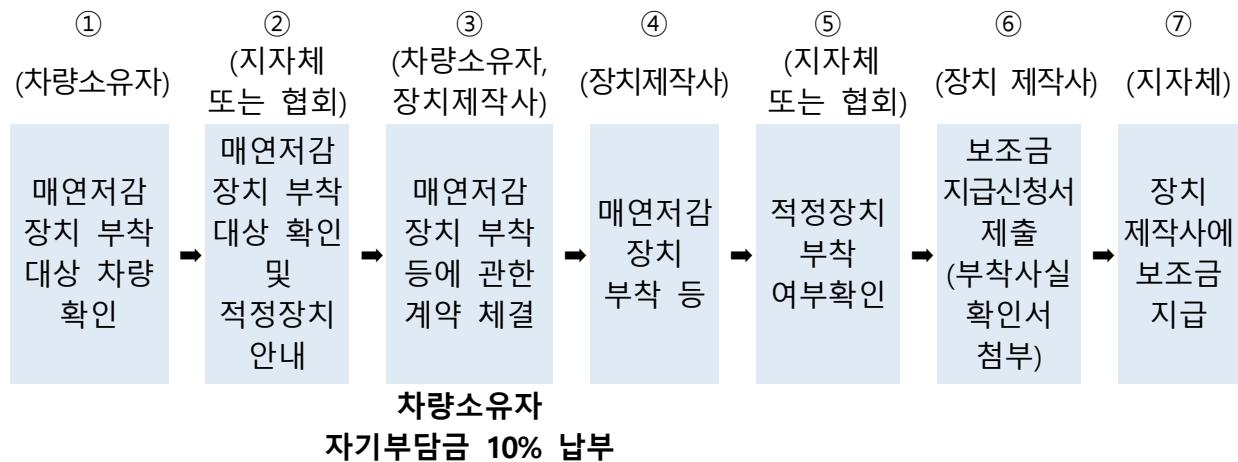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p-DPF	복합소형	RV, 승합	3,727	3,262	12.5%
		화물	3,727	3,355	10.0%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화물	1,986	1,699	14.5%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15.0%
		화물	1,986	1,738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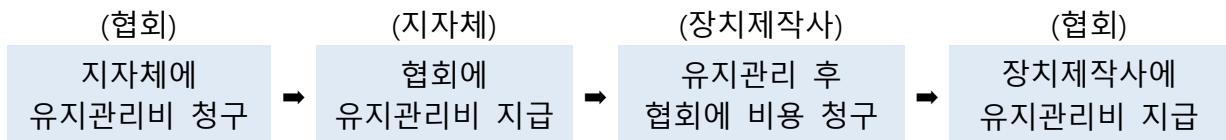
* DPF 462만원(필터클리닝비 46만원, 콜모니터링비 1.2만원) / pDPF 1.2만원(콜모니터링비)

④ 보조금 지급 절차 (유지관리비 포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173~929만원)



○ 장치부착 후 유지관리비 (필터클리닝·콜모니터링 등 1.2~46만원)



⑤ 보조금 사업 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중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 ('대기법 시행규칙' 별표18) >

차종	보증기간
차종 총 중량 3.5톤 미만	5년 또는 80,000km
차종 총 중량 3.5톤 초과	2년 또는 160,000km

○ 지자체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령한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종류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III. 문제점

1 배출가스저감장치 안내기관 불명확

□ 법적 근거가 모호한 기관에서 주된 역할 수행

- ‘배출가스보조금지침’에 따르면, 협회가 차량 소유주에게 적정 저감 장치를 안내해야 하나 제3의 기관이 수행
 - 협회-장치제작사 등이 협의하여 장치부착 업무를 대행하는 ‘배출 가스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주)*’(이하 “센터”) 설립(‘15년)
* (업종) 자동차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노후차량이 몰려있는 수도권 ('20년 보조금 대상 전체 차량의 82%) 중심으로 관련 문의처로 센터를 안내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인식

※ '19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보조금 대폭 확대 등으로 장치부착 수요 급증과 함께 지자체 업무 폭증으로 센터에서 상당부분 전담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청하려는데,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1544-7302) 전화 연결이 너무 안 됩니다. ('19.10월, 지자체 민원)
- 부착지원센터로부터 부착해 줄 공업사를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명령서가 접수 안 되어 부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19.9월, 지자체 민원)

- 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제작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차주는 센터가 안내해준 장치제작사와 계약하므로, 안내를 받아 장치를 판매한 제작사는 센터에 건당 25~8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

- 이는 제작사의 물량 확보를 위해 제3자와의 약정을 금지하는 '배출가스보조금지침' 위반 소지
 - ※ '18년 센터 매출액 : 134억

< '배출가스보조금지침' 中 발췌 >

- | |
|---|
| <input type="checkbox"/> (제3자 약정금지) <u>장치제작사</u> 및 엔진교체사업자는 <u>저공해 조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와 약정하고 그에 대한 급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u> |
| <input type="radio"/> 위반 시 해당 제작사 및 엔진교체사업자의 보급물량 제한 및 기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 정부보조금 브로커(대행업체)가 묵인되는 상황

- 제작사간 과도한 영업경쟁 및 보조금 브로커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센터와 브로커*가 공생하는 구조
 - * 노후차량 소유주를 찾아다니며 장치부착 신청을 홍보·대행하고, 제작사로부터 20~80만원의 영업수수료를 받는 영리업자
- 센터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센터가 브로커 수수료까지 받아주는 상황
 - 브로커를 통해 장치부착이 신청된 경우, 센터가 제작사에서 25~85만원을 받아 그 중 20~80만원을 홍보처 업무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전달
 - 그 외 5만원은 센터가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수취 ('2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센터와 브로커(대행업체)간 계약서에 첨부된 수수료 지급 조건표 >*

장치명	원동기형식	센터 관리수수료	홍보처 영업수수료
복합소형DPF	D4BF	5만원 / 대	20만원 / 대
	D4CB, D4BH, J3, D4EA, D4CB, D4EB, 쌍용차	"	30만원 / 대
중형DPF		"	55만원 / 대
대형DPF		"	65만원 / 대
건설기계, 동시저감 DPF		"	80만원 / 대

* '20.8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협회는 제작사로부터 장치부착 1건당 4~6만원을 연동회비 수수 ('20.8월, 권익위 실태조사)

2 유명무실한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 자기부담금 미납시에도 보조금 지급

- 차주는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할 때 자기부담금(10%)을 납부해야 하나 미납시에도 보조금 지급 ('2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제작사와 차주가 자기부담금 '분할 또는 후납 조건'으로 계약 후 이미 납부한 것처럼 시스템(MECAR)*에 등록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안산시) 차량소유자가 자기부담금을 미납하였으나, 제작사는 완납 받은 것으로 시스템(MECAR)에 허위 등록 ('2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인천광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사는 차량소유자가 폐차 시 자기부담금을 후납하는 조건으로 최근까지 계약 체결 ('2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로 인해 자기부담금 미납 사실을 모르고 해당 차량을 중고매입한 현재 차주 피해를 보는 상황 발생

-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폐차하려면 전 차주가 미납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폐차 가능

- '17년, 환경부가 자기부담금을 선납토록 지침을 개정했으나, 이전 차량의 경우 중고차 폐차시 문제 지속

- 최근에도 환경부는 '본인부담금 납부 시점은 제작사와 차주간 상호 약정에 따른다.'고 민원회신함으로써 제도 미비로 인한 피해책임을 현재 차주에게 전가

- 중고차를 폐차하려는데,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하고, 장치 부착시 차주가 안낸 자기부담금을 제가 내야 한다는데, 이건 무슨 억지입니까? 15년 전에 차주가 안 낸 자기부담금을 수차례 거쳐 중고차로 매매한 차주더러 내라는 건 도저히 이해불가입니다. ('20.2월, 국민신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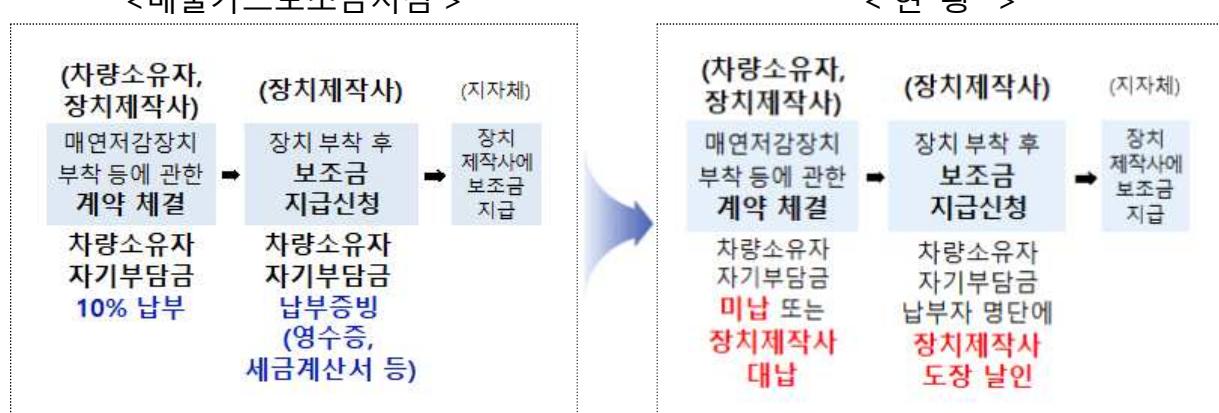
☞ (답변) 본인부담금은 부착 당시 또는 차량 말소시에 지불할 수 있도록 제작사와의 상호 약정에 따름

□ 자기부담금을 제작사가 대납

- 일부 제작사가 최근까지 24만원에서 103만원에 이르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한 정황
 -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8월), 제작사가 사업 시행초기부터 '20.7월까지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통상 대납
- 제작사가 센터 등에 20~80만원의 장치부착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주 자기부담금 24~103만원까지 대납하는 것은 제작사의 장치 수익이 건당 최소 44만원에서 최대 213만원을 초과함을 반증
 - 이로 인해 환경부의 위탁으로 (주)한국물가협회가 진행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원가 산정 결과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8월), A제작사가 생산하는 1종 DPF 대형복합재생 특정 모델의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원이나 환경부에는 870만원으로 제출

□ 실효성 떨어지는 자기부담금 납부증빙 방식

- 제작사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을 하여야 하나 혼위 증빙이 손쉬운 상황
 - ※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으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첨부(배출가스보조금지침)
- 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방식을 확대 해석하여 납부자 명단에 제작사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명



3

진행상황을 알 수 없고, 차주의 선택권이 제한된 부착과정

□ 신청서 접수현황, 장치 부착 시기 등 진행상황을 묻는 민원 지속

- 협회나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전화연결이 거의 안 돼 2차 민원 발생

- 연초 신청서를 팩스 접수했는데, 접수 완료 등의 문자나 저공해조치를 시행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못함. 신청 접수는 완료됐는지, 완료됐다면 언제쯤 부착이 가능한지 알려주기 바람 ('19.10월, 지자체 민원)
- 매연저감장치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전화를 여러 번 하였으나 계속 통화중이라 글을 남깁니다. 담당인원이 부족하여 전부 소화하지 못한다면 홈페이지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19.12월, 지자체 민원)

- 장치 부착까지 6개월 이상 기다려야할 만큼 수요가 많지만, 불충분한 진행상황 안내로 순서 불투명 등에 대한 불신

- '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달려있지 않을 걸 보고 전화를 드렸다. 나를 통하면 바로 장치 부착이 가능하다'라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음. 이런 전화를 4번은 받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치를 부착하면,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순번이 뒤로 밀려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주기 바람 ('19.11월, 지자체 민원)

- 센터-제작사-공업사간 문제가 발생해도 신청자가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장치 부착이 계속 지연되는 등 혼란 유발

- 센터에서 공업사를 배정받아 기다리다 아무 연락이 없어 공업사에 연락했더니, 접수사항이 없다며 센터에 문의하라고 해 센터에 전화했더니, 센터는 공업사에 전달했다, 공업사는 연락 안 받았다 핑퐁게임을 합니다.. ('19.9월, 지자체 민원)
- 6개월 넘는 시간동안 아무 안내가 없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빨리 저감 조치하라는 독촉 공문을 보내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재 신청순서가 어떤지, 언제쯤 지원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9.8월, 지자체 민원)
- 2월에 신청하고, 중간에 한번 연락했더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9월에 또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또 신청해야 하는지 계속 기다리면 되는지 확인요청합니다. ('19.9월, 지자체 민원)

□ 차주의 선택권이 제한된 공업사 지정방식

- 제작사가 지정한 공업사에서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주 운행지역에 해당 공업사가 없을 경우, 원거리 공업사까지 이동하는 불편

※ 차량 등록지는 수도권이나 주 운행지역이 지방인 경우, 제작사가 지정한 지방 소재 공업사를 찾기 어려워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 차량 주소지는 서울이고, 실제 운영지역은 대구임. 장치 장착하려 굳이 서울로 올라가기 번거로워, 제작사에 대구 공업사에서 부착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함. 제작사에서 자가들 연결된 곳이 있어서 강요를 하는 건지, 대구 지역에서도 달 수 있는 건지 답변 요청함. ('20.1월, 지자체 민원)
- 차량 주소지는 서울이나 차량은 남양주에 있다고 하자, 협회에서 남양주 공업사를 안내해 줌. 남양주 공업사에서 서울시 등록 차량이니깐 해당 공업사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함. ('20.2월, 지자체 민원)

4

장치부착 후 관리 부실 등으로 국민불편 유발

- 장치를 부착한 차주에게 장치부착 권유 안내문을 보내거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민원 발생

- 재작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검사도 통과했는데 장치 부착 관련 우편을 발송함. 내용 확인 차 수차례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려움 ('20.6월, 지자체 민원)
-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였는데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단속되었다는 위반 사실 통지가 문자로 옴 ('20.7월, 지자체 민원)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 5등급 카카오 문자가 계속 수신됨. 이렇게 문자를 계속 발송하는 것은 홍보도 아닌 협박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고 매우 불쾌함 ('19.7월, 지자체 민원)

- 장치부착 후 필터청소, 부품교체 등 유지관리 서비스 불만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지 3년 째 되는데, A/S신청 후 제작사에서 한번 보더니 부속이 없다고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음. 국가에서 천만원이 넘는 큰 돈을 보조 해주는데 제작사의 사후관리가 너무 형편없음 ('20.4월, 지자체 민원)
- 제작사에서 2년 동안 무상으로 교체 및 청소를 할 수 있음. 매연이 너무 심해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데 ARS멘트만 송출되고 이를 내내 전화를 받지 않음. 서비스를 등한시하는 것 같고 개선이 필요함. ('20.1월, 지자체 민원)

III. 개선방안

1 배출가스저감장치 신청기관 명확화

□ 법적 근거 없는 ‘부착지원센터’ 제외 명시

- 민간기업인 센터와 해당 사업이 관련없음을 적시하여 센터를 공공 기관으로 인식하는 혼란 해소
 - ‘배출가스보조금지침’상 (제3자 약정금지) 위반의 예시로 센터, 브로커(대행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

☞ ‘배출가스보조금지침’ (제3자 약정금지) 개정 (환경부)

< (예시) ‘배출가스보조금지침’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제3자 약정금지) 장치제작사 및 엔진 교체사업자는 저공해 조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와 약정하고 그에 대한 급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 (신 설)	(제3자 약정금지) 장치제작사 및 엔진 교체사업자는 저공해 조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와 약정하고 그에 대한 급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 ※ 제3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 대행업체, 홍보업체, 대리점 등 명칭 불문
○ 위반 시 해당 제작사 및 엔진교체 사업자의 보급물량 제한 및 기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위반 시 해당 제작사 및 엔진교체 사업자의 보급물량 제한 및 기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투명화

- 협회가 대행 중인 보급물량 관리 지원, 적정장치 안내, 장치부착 후 유지관리 비용에 관련된 규정 마련 및 정확한 비용산출·명시
- 민간위탁 관련 일반법령(‘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배출가스보조금지침에 적시
- 협회가 장치부착 건수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받는 연동회비를 제한하여 불투명한 비용 수수 관행 근절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환경부)
 '배출가스보조금지침' 개정 (환경부)

< (예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선(안) >

현 행	개 선(안)
제2장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u>제5조의 3 (신 설)</u>	제2장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u>제5조의 3 (배출가스저감장치 안내 및 사후관리)</u> ① 대기법 제80조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안내와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예시) '배출가스보조금지침' 개선(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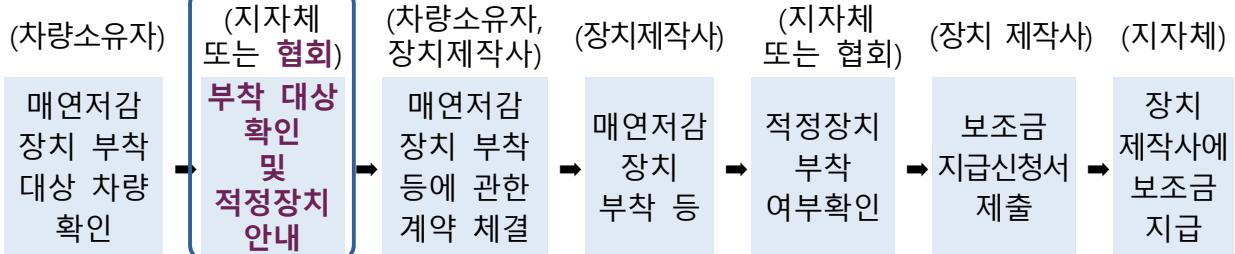
현 행	개 선(안)
6. 보급물량, 신규인증 장치(엔진 포함) 관리 <u>(신 설)</u>	6. 보급물량, 신규인증 장치(엔진 포함) 관리 <u>(협회 연동회비 금지) 협회는 장치제작사로부터 장치 부착 건수 등에 연동되는 비용을 받을 수 없음</u> <u>※ 연동되는 비용은 회비, 후원금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음</u>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관련 협회가 수행하는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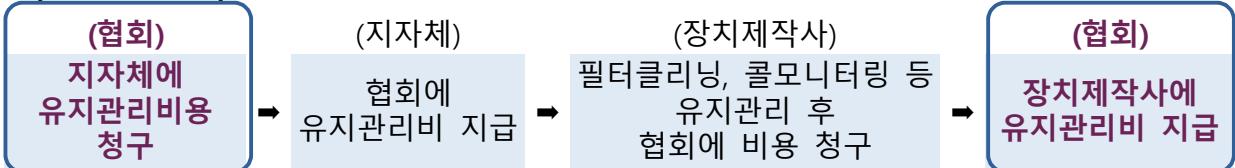
▶ (장치부착 전) 보급물량 관리 지원

-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보급물량의 제한, 중단 또는 상향을 환경부에 요청

▶ (장치부착 시) 차량소유주에게 적정장치를 안내하고, 제작사 연계



▶ (장치부착 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실태 모니터링



2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실효성 강화

□ 장치 제조원가 재검토 및 자기부담금 재산정

- 부패신고 등을 통해 제기된 장치 가격 부풀리기 및 가격담합 의혹 해소
 - 각 제작사의 연도별 장치 판매개수·매출이익 등을 비교검증하여 장치가격을 재검토하고 적정 원가 재산정

< (예) '19년도 장치제조사 매출이익으로 추정해본 장치가격 재검토(안) >

	A 제작사	B 제작사
제조원가 대비 장치별 최대이익률*①	3.2%	5.5%
장치 1개당 최대이익② (최고가 장치가격(10,327,000원) × ①)	330,464원/개	567,985원/개
총매출이익*③	23,698,320,951원	19,102,105,280원
총매출 모두 장치 판매수익이라고 가정시, 총매출이익에 따른 장치 판매개수 (③/②)	71,712개	33,631개

- ▶ 위 계산으로 추정시, 최고가 장치만 판매했더라도 두 제작사에서만 총 105,343개를 판매한 것으로 전체 지원 대상 물량 94,993대보다 10,350대가 많은 모순 발생
- ▶ 지원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인바, 매출이익의 상당부분이 장치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같은 방식의 검증을 통해 제조원가 전면 재검토

* 해당 제작사가 '201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원가 및 적정 보조금 재산정 연구'를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장치별원가계산서 및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 (권익위 실태조사('20.8월))

- (주)한국물가협회 등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산정 의뢰시 사후 검증
 - ※ 예) 한국조달연구원의 원가검증사업 :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제출한 원가계산서의 비목별 적정성을 검토

< 한국조달연구원의 원가검증 방법 >

재료비	재료의 실 소요량 검증, 재료단가의 신뢰성 검증, 매입단가 증거자료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3~6개월의 가중평균가 적용
노무비	제품제작에 실제 투입 인원과 기간별 생산량 검토, 임율은 관련 기관의 고시 노임단가 및 실지급율 반영 여부확인, 간접노무비율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의 적용 여부 검토
경 비	업체 제조원가 명세서의 경비 구성비가 높은 비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일반관리비, 이윤	업체의 손익계산서 실제 비율과 법정 비율을 비교하여 적정 비율 적용 여부 검토

-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10%이므로 장치 제조원가 재검토 후 자기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차량소유주에게 환급 진행
 - ☞ 제작사별 장치 판매개수·매출이익 비교·검증으로 적정원가 재산정 (환경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산정 의뢰시, 사후 검증 방안 마련 (환경부) 재검토 결과에 따라 차주 자기부담금 재산정 및 환급 (환경부, 지자체)

□ 중고차 거래시 자기부담금 납부 확인방안 마련

- 중고차 매매계약 전 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문제 조기 차단
-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하는 내용 확대
 - *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압류내역 등 자동차포털이력정보 제공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별지 제16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개정 (국토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정보 확대 (국토부)

< (예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u>차량에 대한 국가보조금 중 자기부담금 납부</u>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 4. (생략)	3. ~ 4. (생략)
5. 자동차 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포털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g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5. 자동차 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u>자동차 관련 국가보조금 중 자기부담금 납부내역</u> 등 자동차포털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g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방식 구체화

- 차주 명의의 카드 매출전표, 차주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 장치부착 계약서* 등 자기부담금 완납 증빙

* 장치부착 계약서에 '자기부담금 선납'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

☞ '배출가스보조금지침' [별제 제3호 서식] 개정 (환경부)

< (예시) '배출가스보조금지침'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 첨부서류 1.~6. (생 략)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u>영수증, 세금계산서 등</u>) 1부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 첨부서류 1.~6. (생 략)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u>영수증, 세금계산서 등</u>) 1부 ※ <u>자기부담금 납부 증빙시 차량소유자의 서명 또는 인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u>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진행과정 공개

□ 장치부착 진행상황 상시 확인 체계 마련

- 지자체나 협회 등을 거치지 않고 차주가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 개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 주요 기능

- ▶ 자동차의 각종 배출가스 관련 검사자료 통합·관리 및 제도별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정부기관, 지자체, 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등에서 사용 가능
 - (제작차 배출가스 관리) 인증시험 관리, 인증생략 관리, 정기수시검사 관리, 시설확인 검사 관리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정밀검사 결과 관리, 수시점검(원격측정) 관리, 전문정비 관리, 확인검사 관리
 -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저감사업 예산관리, 저감장치 등록관리(부착·교체), 저감 장치 사후관리(클리닝, 탈거 등), 노후차 조기폐차 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등급 관리, 통행 운행제한 자료관리 등

- 또는 SMS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안내하여 국민 혼란 및 순서 불투명 등에 대한 불신 해소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개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SMS로 진행상황 안내 시 안내양식 마련, '배출가스보조금지침'에 반영 (환경부)

□ 공업사 선택권 등을 확대하여 장치부착 접근성·편의성 제고

- 대상 차주에게 발송하는 장치부착 안내문에 제작사·전화번호 및 주소지 인근 장치부착이 가능한 공업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예) 건강검진 안내문 : 지역검진기관명·전화번호·검진종류 등 제공

☞ 장치부착 안내문에 기재될 제작사 및 인근 공업사 정보 제공양식 마련, '배출가스보조금지침'에 반영 (환경부)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관리 강화

□ 장치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 교통시스템과의 연계 시차 등으로 장치부착 후에도 일정 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착오 단속될 수 있음을 안내
- 착오 단속시 조치방법도 안내하여 차주의 과태료 오납부 방지
- 장기적으로는 장치부착 결과를 관련 교통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문 마련, '배출가스보조금지침'에 반영(환경부)

VI.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소관기관 : 환경부, 국토부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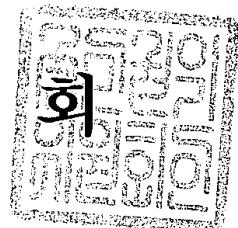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안내기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부착지원센터'가 관련없음을 적시하여 차주의 혼란해소☞ 「배출가스보조금지침」(제3자 약정금지) 개정	환경부
②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가 대행 중인 업무 비용에 관련된 규정 마련○ 협회가 장치부착 건수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받는 연동회비를 제한하여 불투명한 비용 수수 관행 근절☞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배출가스보조금지침」 개정	환경부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진행과정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제작사의 연도별 장치 판매개수·매출이익 비교·검증으로 장치가격 재검토☞ 적정원가 재산정 후 차주 자기부담금 재산정 및 환급, 사후검증방안 마련○ 중고차 매매계약 전 차주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현재 차주의 피해 예방☞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및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정보 확대	환경부 국토교통부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주의 장치제작사 및 공업사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민 불편 해소☞ 장치부착 안내문에 기재될 제작사 및 인근 공업사 정보 제공양식 마련, 「배출가스보조금지침」에 반영○ 장치부착 진행상황 상시 확인 체계 마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선 또는 SNS로 진행상황 안내 시 안내양식을 마련하여 「배출가스보조금지침」에 반영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치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문 마련, 「배출가스보조금지침」에 반영	환경부

□ 조치기한 : 2021. 6월

정 본 입 니 다.

2021. 2. 15.

국 민 권 익 위 원



○ ○ ○ ○
○ ○ ○ ○
○ ○ ○ ○
○ ○ ○ ○
○ ○ ○ ○